

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]

화약류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약류는 폭약 80톤 이상이거나 다음 표에 해당하는 화약 및 화공품 등의 물질로서 폭약 80톤 이상으로 환산되는 수량인 경우를 말한다.

| 종 류 | | 폭약 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 약 | | 2톤 |
| 화공품 (탄약을 포함한다) | 실탄 또는 공포탄 | 200만개 |
| | 신관 또는 화관 | 5만개 |
| | 총용뇌관 | 250만개 |
| |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 | 100만개 |
| | 신호뇌관 | 25만개 |
| | 도폭선 | 50킬로미터 |
| | 기타 화공품 | 해당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|
| 폭약·화약 및 화공품외의 물질로서 폭발성을 가진 것 | | 2톤 |